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원격 구술심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이용 요청 권한 신설〉

■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39호)

2025. 4.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원격 구술심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이용 요청 권한 신설	3

I. 제안경위

1.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2. 제안일 : 2025. 1. 24.
3. 회부일 : 2025. 1.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심판의 심리를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도록 하면서,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구술심리는 법률적인 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글이 아닌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 방법으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의 중요한 수단임.

그런데 구술심리를 희망하는 모든 청구인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행정심판위원회 청사로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온라인 화상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이 구술심리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심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원격 구술심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이용 요청 권한 신설

- 개정안은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구술심리의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청구인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는 대신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심리의 방식)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0조(심리의 방식)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원회는 청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술심리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 현행법은 행정심판의 심리 방식을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¹⁾ 중 위원회가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²⁾

○ 다만, 행정심판은 위원회가 비상설기관이라는 점, 행정심판은 약식 재송절차를 통해서 간이·신속한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술심리가 원칙인 행정소송과 달리 서면심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³⁾

[표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 개최 현황

구분	서면심리 (처리건수 대비 비율)	구술심리			
		계 (처리건수 대비 비율)	당사자 신청→허가		직권
				원격구술심리	
2022년	21,094건 (99.7%)	65건 (0.3%)	13건	0건	52건
2023년	27,786건 (99.6%)	101건 (0.4%)	14건	2건	87건
2024년	19,202건 (99.2%)	155건 (0.8%)	31건	4건	124건
2025년 (25. 4. 15.기준)	5,132건 (99.3%)	34건 (0.7%)	3건	1건	31건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1) 구술심리란 당사자가 직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고 위원회가 양 당사자 제출한 자료 및 진술 내용을 기초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심리 방식을, 서면심리란 서면상의 진술만을 기초로 판단하는 심리 방식을 말함.

2) 「행정심판법」 제40조(심리의 방식) ①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간이통지방식으로 할 수 있다.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2022), 509.

- 그런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 중 다수는 법률 비전문가로, 이들이 사건을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 법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청구인이 효율적으로 처분 등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술심리의 기회가 폭넓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구술심리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당사자 편의를 위하여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의 심리기일에도 영상재판이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심판 심리에도 구술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원격지에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구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진술하는 방식으로 하는 원격 구술심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 장소가 한정되어 있음.

[표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원격 구술심리 제도 개요

- (배경)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장소적 한계에 따른 국민 편의 증진 도모
- (현황) ‘서울청사→인접 광역지자체→모바일을 통한 자택 등’ 단계적 확대 목표
 - * 현재 3개 지자체(전북, 제주, 강원)와 업무 협약 체결, 서울의 경우 정부서울청사 심판정에서 진행
 - ** (전북) 24.6.20. (제주) 25.1.24. (강원) 25.2.2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에, 개정안은 청구인이 구술심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청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청사에서 청구인이 본인의 주장을 진술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원격 구술심리 제도가 모든 행정심판위원회로 확대되는 한편, 현재 업무협약을 체결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청사만을 장소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에서 모든 위원회가 별도의 협약 체결없이 청구인의 거주지 인접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구술심리를 위한 장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청구인의 심리기일 출석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구술심리 신청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익구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관련된 정책의 추진 방향,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여건 상황 등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현재 118개 행정심판 기관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26년 완료 예정), 해당 시스템에는 당사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화상 회의시스템이 탑재되어 원격 화상 심리가 이루어질 예정(26년 1월 도입 예정)이므로, 동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원격 구술심리 장소로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이용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3]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현황

1단계 (기반구축)	2단계 (고도화)	3단계 (자동화)
'24년도	'26년 1월	'26년도
- 전자행정심판 홈페이지 및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안전검토 및 전자 심의	- 원격 구술화상심리 시스템 - 다국어 지원 홈페이지 - 처분청 담당자들에게 통계 분석 시스템 제공	- AI기반 지능형 챗봇 상담 - 청구서·답변서 등 서류 자동 완성 서비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의 구술심리 요청이 있으면 시·군·구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청사를 원격 구술심리 장소로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는데,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원격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원격 구술심리를 위해서는 심리를 위한 장소와 영상회의 시스템 및 이를 지원할 인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장소·시스템·인력 등이 준비

4)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원격 구술심리 제도 운영을 위한 인력·장비 등의 부재, 여건 마련을 위한 지원 필요 등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한편, 개정안에 따른 심리 방식 변경을 수용할 경우, 동 법 제40조를 준용하고 있는 조세심판, 선거소청 등 특별행정심판의 심리 방식에도 변화를 수반하게 되므로,⁵⁾ 각 행정심판의 특성에 따라 심리 방식을 정비하거나 개정안에 따른 변경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현행법은 행정심판 심리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을 수용하려는 경우 행정심판의 심리는 원격으로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위원회가 원격 심리 장소로 지방자치단체

5)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 ① 선거소청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15조(선정대표자),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제2항부터 제4항까지(이 경우 "법인"은 "정당"으로 본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20조(심판참가),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29조(청구의 변경), 제30조(집행정지)제1항, 제32조(보정),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증거조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43조(재결의 구분)제1항·제2항,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7조(서류의 송달) 및 제61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을 준용하고,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 "행정심판"은 "선거소청"으로, "청구인"은 "소청인"으로, "피청구인"은 "피소청인"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은 "소청"으로, "심판청구서"는 "소청장"으로, "재결"은 "결정"으로, "재결기간"은 "결정기간"으로,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재결서"는 "결정서"로 본다.

청사를 이용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⁶⁾

- 이상을 종합하면, 개정안은 행정심판 청구인의 권익구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원격 심리와 관련된 제도의 추진 경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력, 공간, 장비 등 현실적 여건 부족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개정안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⁷⁾

문 의 처
02)6788-5112

6) 영상재판을 도입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은 원격 심리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특허심판, 조세심판 등도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원격 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①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7)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인력·장비·공간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